

[별표1]

##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

### 1.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

심사항목	심사분야	심사방법	배점한도
1. 수행능력	사업수행 능력	▷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 $\text{* 평점} = \frac{\text{평가점수}}{100} \times 70\text{점}$ -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	70점
	신인도	[별표2]에 따름	+1.0 ~ △4.0
	소계		70점
2. 입찰가격		▷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 $\text{* 평점} = 30 - \left  \left( \frac{90}{100} \frac{\text{입찰가격}}{\text{예정가격}} - 1 \right) \right  \times 100$ *     는 절대값표시임  *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 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 리에서 반올림  *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.  *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에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8이상인 경우의 평 점은 22점으로 한다.	30점
<b>합 계</b>			<b>100점</b>

**【주】**

"사업수행능력"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세부평가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.

## 2.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

심사항목	심사분야	심사방법	배점한도
1. 수행능력	사업수행 능력	▷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 $\text{* 평점} = \frac{\text{평가점수}}{100} \times 50\text{점}$ -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	50점
	신인도	[별표2]에 따름	+1.0 ~ △4.0
	소계		50점
2. 입찰가격		▷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 $\text{*평점} = 50 - 2 \times \left  \left( \frac{90}{100} \frac{\text{입찰가격}}{\text{예정가격}} - 1 \right) \right  \times 100$ *     는 절대값표시임  *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*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.  *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2.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.	50점
합 계			100점

### 【주】

"사업수행능력"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세부평가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.

3.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  
(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은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)

심사항목	심사분야	심사방법	배점한도
1. 수행능력	사업수행 능력	▷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 $* \text{평점} = \frac{\text{평가점수}}{100} \times 30\text{점}$ -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	30점
	신인도	[별표2]에 따름	+1.0 ~ △4.0
	소계		30점
2. 입찰가격		▷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 $* \text{평점} = 70 - 4 \times \left  \left( \frac{90}{100} \frac{\text{입찰가격}}{\text{예정가격}} - 1 \right) \right  \times 100$ *     는 절대값표시임  *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*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.  *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<b>91.25</b>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.	70점
합 계			100점

【주】

- "사업수행능력"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세부평가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.
- 고시금액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.

#### 4.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(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)인 용역

심사항목	심사분야	심사방법		배점한도
1. 수행능력	경영상태	'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' (자기자본/총자산)/기준비율	5	10점
		A. 100%이상 B. 90%이상 C. 80%이상 D. 70%이상 E. 70%미만	(5) (4.5) (4) (3.5) (3)	
		'최근년도유동비율' (유동자산/유동부채)/기준비율	5	
		A. 100%이상 B. 90%이상 C. 80%이상 D. 70%이상 E. 70%미만	(5) (4.5) (4) (3.5) (3)	
	신인도	[별표2]에 따름		+3.5 ~ △4.0
	소계			10점
2. 입찰가격		▷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 $90 \text{ 입찰가격}$ $* \text{평점} = 90 - 20 \times \left  \left( \frac{\text{입찰가격}}{100} - \frac{\text{예정가격}}{\text{예정가격}} \right) \times 100 \right $ $100 \text{ 예정가격}$ *     는 절대값표시임  *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 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 리에서 반올림  *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*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 의 90.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.		90점
합 계				100점

#### 【주】

1. 고시금액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규정에 의  
 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.

2. "경영상태" 평가

- 가.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한 후 나온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평가한다.
- 나.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(업종보완업체)는 평가에서 제외한다.
- 다.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"기업경영분석"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.
- 라. 다만,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은 배점한도를 부여한다.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 심사기준일은 제2조 제2항을 따르고, 창업기업에 대한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,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.
- 마. 준비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"기업경영분석"자료를 적용하되 입찰공고 시 별도 명시한다.